

**2024년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2차 공모 재공고 안내**

2024. 5. 29.

PACEN

PATient-CENtered Clinical Research Coordinating Center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

목 차

I. 사업개요	3
II. 2024년도 2차 신규지원 계획	6
III.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청서(RFP)	9
IV. 신청요건 및 방법	17
V.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26
VI. 향후 연구사업 관리	29

[붙임 1] 의료기술 비교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활용 PACEN 1단계 선정·지원한 연구주제 목록	13
[붙임 2] K-AGREE II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14
[붙임 3]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관리	34
[붙임 4]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심의 의무화	35
[붙임 5]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보고·공개	37
[붙임 6]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40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 2차 공모안내

I . 사업개요

1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개요

1. 연구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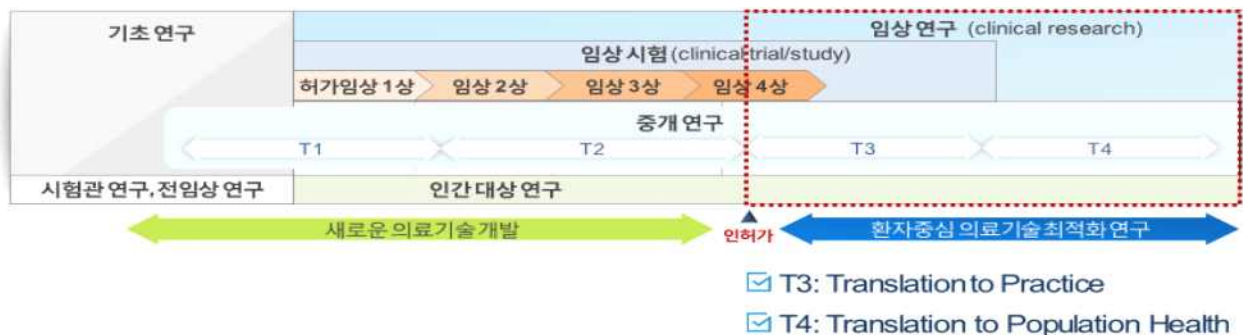
- 공익적 가치 중심의 임상연구 지원을 통해 다양한 의료기술 간 비교 효과성 등의 근거를 생성하고 이를 임상현장 및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국민건강의 향상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함

2. 연구사업 특성

- 인·허가 후 보건의료현장에서 통용되는 의약품·의료기기·의료행위 및 의료서비스·전달체계 등 의료기술의 효과성·안전성·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를 생성하는 국가 지원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공익적 임상연구*)
 - (환자중심) 환자에게 유용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를 규명하는 연구를 지원하며, 연구의 전 단계에서 환자의 요구와 관점 및 가치를 반영하고자 함
 - (의료기술)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 건강과 생명의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기술
 - (최적화) 다양한 의료기술 중 환자에게 임상적 차원, 환자 건강의 질적 차원, 경제적 차원에서 최적의 보건의료성과를 낼 수 있는 의료기술을 규명하고 제공하는 과정
- * 공익적 임상연구: 보건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의 실제적 효과, 장기 안전성 등 환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립적 관점에서 환자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임상적·정책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근거를 생산하는 실용연구

3. 연구사업 지원 범위

- 허가 후 보건의료현장에서 통용되는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연구(중개연구 분류 T3 및 T4)



3. 연구사업 전략체계

비전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 구축		
목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보건의료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술 최적화		
전략방향	다양한 의료기술 간 비교를 통한 최적화	임상근거 확보를 통한 의료기술 과학화	연구 수행 및 확산체계 효율화
내역사업	의료기술 비교평가연구		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
세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환별 진단/치료기술 비교평가연구 ○ 질환별 예방/관리기술 비교평가연구 ○ 의료취약계층 건강성과 비교평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 적용 치료법 근거생성연구 ○ 의료기술 응용·변경요법 근거생성연구 ○ 미확립 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
추진전략	환자중심성 강화 (Patient-centeredness)	보건의료현장 근거 생산 (Real-World Evidence)	보건의료정책과 연계 (Health policy linkage)
			자료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Data platform)

4. 연구사업 구조

내역사업	① 의료기술 비교평가 연구	② 의료기술 근거생성 연구
사업내용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료기술 간 상대적 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에 관한 비교평가연구	임상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안전성·유효성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기술에 대한 근거산출연구
세부과제 분류	①-1 질환별 진단/치료기술 비교평가연구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주요 질환에 대한 진단/치료 의료기술별 환자성과 비교연구	②-1 첨단기술 적용 치료법 근거생성연구 혁신적·고비용 의료기술 도입에 따른 환자성과 및 재정영향 변동에 대한 근거산출연구
	①-2 질환별 예방/관리기술 비교평가연구 생애주기별 질환 예방/관리 의료기술에 대한 환자성과 비교연구	②-2 의료기술 응용·변경요법 근거생성연구 의학적 필요도가 있으나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이 제한된 허가범위 외 사용 의료기술에 대한 근거산출연구
	①-3 의료취약계층 건강성과 비교평가연구 의료적 취약계층의 건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간 효과 비교 및 성과평가 연구	②-3 미확립 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의료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의 근거산출연구
세부과제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향연구(다기관·다학제 구성) - 무작위배정비교임상시험(RCT)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특성에 따라 실용임상시험(PCT), 또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 가능 ▷ 후향연구 - 다양한 후향적 자료 및 2차 자료원을 활용한 성과연구 ▷ DB 활용 후속연구 - 기구축된 양질의 임상연구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연계·결합하는 성과연구 ▷ 가이드라인 연구(학회의 위임·참여, 다학제 구성) - 한국형 임상진료지침의 정립이 필요한 분야의 개발(제·개정) 지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 2차 공모안내

II. 2024년도 2차 신규지원 계획

1

2024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지원 개요

1.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개요

※ 공고단위(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사업별 제안요청서(RFP)’ 확인 요망

※ 선정예정 과제 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고단위 (RFP명)	지원규모	지원기간	선정예정 과제 수	지원 대상
의료기술 비교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100백만원 이내/년	연구개시일('24.7월 예정) ~ 2025. 06. 30.	3개	학·연·병

2. 공고단위(RFP명)별 연구 지원기간

※ 연차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단위 (RFP명)	연구기간	단계 구분
의료기술 비교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연구개시일 ~ 2025. 06. 30.	단계없음

3. 추진일정

- ('24. 4월 중) 신규지원 대상과제 2차 공모(30일 이상)
- ('24. 6월 초) 신규지원 대상과제 2차 재공모(10일 이상)
- ('24. 6월 중) 신청과제 선정평가
- ('24. 7월 초) 선정 평가결과 평가(평가위원회) 및 심의(운영위원회)
- ('24. 7월 중) 선정과제 연구 개시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과제 신청 전 숙지사항〉

- 연구자는 ‘제안요청서(RFP)’ 와 ‘공고안내서’ 의 내용을 숙지한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RFP별 지원자격, 연구비 규모 및 기간, 지원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과제 신청(전산입력) 마감시간 이후 지원 분야, 연구계획서 본문 등의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를 준수해야 합니다.
 - 연구책임자는 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는 NTIS (www.ntis.go.kr)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 차별성 검색: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차별성 검토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연구과제 2차 공모안내

Ⅲ.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청서(RFP)

1

의료기술 비교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제안요청서명 (내역사업명)	의료기술 비교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의료기술 비교평가연구)			보안과제 여부 (보안등급)	일반
공모유형	품목지정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여부	X
적용대상 가점	X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여부	X	데이터관리계획 제출대상 여부	X
과제명	※ '해당연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과제명 기술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기간	연간 연구비	협약형태	선정예정 과제 수	
	연구개시일('24. 7월 예정) ~ 2025. 6. 30.	100백만원 이내/년	단년도	3개	
※ 연구기간 및 지원연구비는 「202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개요」 참조 ※ 지원기간은 필요시 사업단과 협의의 결과에 따라 협약변경을 통해 추가 연구비 지원 없이 최대 6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					

□ 연구사업 특성 및 지원 목적

- 동 연구사업의 목적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보건의료기술(의료서비스 및 전달체계 포함)의 임상적 효과성, 안전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생산하여 임상현장 및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임
- '의료기술 비교평가 가이드라인 연구'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진단·치료·재활 관련 보건의료기술(의료서비스 및 전달체계를 포함) 간 임상적 효과성·안전성 등의 비교 우위와 관련하여 한국형 임상진료지침의 정립이 필요한 분야의 개발(제·개정)을 지원함

지원주제	내용
질환별 진단/치료기술 비교평가연구	○ 주제영역: 진단·치료법의 표준화, 최적화 - 다양한 의료기술 간 비교평가를 통해 최적의 진단·치료법을 규명하고 표준 치료법을 확립함
질환별 예방/관리기술 비교평가연구	○ 주제영역: 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 개선 -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환자 통합관리 및 연속적 돌봄을 위한 서비스 모델·전달 체계를 기존 서비스와 비교평가함
의료취약계층 건강성과 비교평가연구	○ 주제영역: 의료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제고 - 의료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기술 적용에 있어 대안적 접근을 취하고 표준적 접근과 비교평가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함 * (연구대상 예시) 노인, 소아청소년, 산모·영유아, 장애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지역간 의료불평등 등

- 임상진료지침의 제·개정 및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근거기반 임상적·정책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함

□ 지원분야 및 내용

1. 지원분야

- 보건의료현장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의료기술 간 임상적 효과성, 안전성 및 비용효과성 등의 비교 우위와 관련, 국내 연구결과를 반영한 국내 임상진료지침 제·개정을 지원함
 - 임상적·정책적·사회적 필요성에 기반을 둔 주제를 선정해야 함
 - 임상진료지침이 다루는 임상적 영역/범위와 핵심 이슈가 명확해야 함

- (권장사항) 동 사업 1단계에서 선정·지원한 연구과제의 연구질문*과 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국내 임상진료지침 개발 계획을 제안하는 것을 권장함

* 해당 목록 [붙임 2] 참고

2. 상세내용

- 주요 주제에 대한 명확한 **핵심질문(PICO)**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근거를 평가·종합함으로써(체계적 문헌고찰 수행 필수) 권고안을 도출함

※ PICO (Patient/Population,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s)

핵심질문은 PICO의 4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형태의 질문으로 기술하는 것이 권장됨

- P : 해당 환자집단으로 질병명, 질병의 단계 및 중증도, 성, 연령 등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I : 치료법, 진단법 등의 내용을 명확히 정의함
- C : 중재내용과 비교하는 대조군이 있는지, 있다면 위약인지 다른 중재인지 기술
- O : 치료결과가 무엇인지를 기술. 중재가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건강결과(효과 및 이득에 관한 결과 뿐만 아니라 합병증, 부작용 등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목록화함

- 국내 임상진료지침의 일부 제·개정 - 신규 개발(de novo) 또는 국외 임상진료지침의 수용개작(adaptation) 수행
- 임상진료지침위원회(임상진료지침 개발 관련 조직)가 구성되어 있는 전문학회로부터 본 사업에 지원하는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야 함
 ※ 전문학회(임상진료지침위원회)의 지침 개발 이력 및 위임장(확인서) 제출
- 연관된 분야의 전문가, 방법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 연구팀을 구성할 것을 권장함
- 국내·외 기관 및 학회에서 개발한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 개발 방법론*을 준수해야 함
 * 대한의학회, 한국보건 의료연구원(NECA), WHO, NICE, SIGN, GRADE, NHMRC 등
- 최종 보고서 제출 시 임상진료지침 질 평가 도구(K-AGREE II)를 활용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붙임 3] 참조
- 연구계획서에 임상진료지침의 보급 및 실행(dissemination & implementation)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최종보고서에는 보급 및 실행 실적 및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개정된 임상진료지침은 연구과제 최종평가 전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KOMGI) 웹사이트에 등록해야 함(등록 실적은 최종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성과목표

1. 최소 요구성과

- 성과 달성시점은 연구종료 시까지

최소요구성과		성과 인정 기준
국내 임상진료지침 개발 성과	1건	(1) 제·개정된 임상진료지침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 또는 (2) 제·개정된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대한의학회 인정 또는 (3) 임상진료지침 제·개정을 위임한 학회의 인준서(확인서) 제출
	1건	임상진료지침 제·개정 내용에 대한 환자용 설명자료 개발 및 배포

※ VI. 향후 연구사업 관리의 '연구성과의 관리 및 평가' 참고

2. (권장) 고유성과: 연구자가 제시하는 성과지표(1건 이상)

임상진료지침 적용 대상(환자, 일반인 등)의 참여를 통해 대상자의 관점과 선호도를 반영
(예시) 개발그룹에 참여,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

□ 지원대상

○ IV. 신청요건 및 방법의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참고

□ 특기사항

1. 임상진료지침 개발 방법론 관련 교육 참여 및 (가칭)자문위원단 검토

-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과제 선정 후 1개월 이내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단에서 구성한 자문위원단의 검토·자문 사항을 반영하여 프로토콜을 보완함
- 과제 선정 후,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임상진료지침 개발 관련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하여야 함(워크샵, 온라인 교육 등)

2. 성과확산

- 과제 종료 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사업단과 협력해야 함
 - 연구성과 확산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검토 회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임상적 가치평가 (appraisal), 보건의료정책 수립 지원 목적의 회의 참여 등

□ 평가 관련 사항

- 일반적인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및 「2024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가이드라인」을 따름
- 선정평가
 - 연구책임자 1인이 복수의 가이드라인 연구개발계획서를 신청할 수 없음. 단, DB 활용 후속연구와 가이드라인 연구의 중복 지원은 가능함
 - 지원 과제 수에 따라 세부분야로 구분하거나 유사분야와 통합하여 선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연구수행
 - 과제 선정 이후 실시하는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구두 발표)에 연구책임자는 성실히 임해야 함
 - 연구기간 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종료하여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하여야 함
- 최종평가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은 과제 종료 60일 이내에 제출받으며, 별도의 성과 유예기간 없이 사업단에서 최종보고서 접수 이후 최종평가 예정

□ 선정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배점)	
	대항목	소항목
서면·발표평가	1. 연구의 중요성(20)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0) ○ 환자에게 최적의 보건의료성과 도출 가능성(10)
	2. 연구계획의 우수성(45)	○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10) ○ 연구방법 및 연구기간의 타당성(20) ○ 연구결과 지표의 타당성(15)
	3. 연구자의 우수성(25)	○ 연구책임자의 연구경험 및 연구실적(10) ○ 참여연구진의 과제수행 능력 및 역할 분담(15)
	4. 활용 및 기대효과(10)	○ 예상 연구결과의 활용성 및 기대효과의 우수성(10)

※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배점)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의료기술 비교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활용
PACEN 1단계 선정·지원한 연구주제 목록

연번	연구질문*	(선정 과제번호) 과제명** 연구결과물(논문 서지정보)***
1	급성기 뇌경색 환자가 동맥내 재개통술을 받은 후 적극적인 혈압치료가 환자의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HC19C0028) 급성 뇌경색에서 동맥내 재개통술 직후 표준적 혈압 조절 치료와 적극적 혈압 조절 치료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전향적, 무작위배정, 공개, 눈가림 결과 평가 임상시험 - <i>JAMA</i> . 2023;330(9):832-842. 등
2	심방세동이 동반된 승모판 수술 환자 판막 수술을 받을 때 심방세동 교정 수술을 함께 받는 것이 임상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가?	(HC19C0273) 심방세동이 동반된 승모판막 수술 환자에서 메이즈 술식의 효용성 평가를 위한 다기관 및 국가 빅데이터 연구 - <i>Heart Rhythm</i> . 2023;20(1):3-11. 등
3	한국인에서 양성자펌프억제제를 장기 사용하는 환자에서 위장관암, 치매, 만성 신질환 등의 발생률이 증가하는가?	(HC19C0077) 양성자펌프억제제 장기사용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공동데이터모델과 공공의료 빅데이터 비교 분석 - <i>Gut</i> . 2021;70(11):2066-2075., <i>J Gastroenterol Hepatol</i> . 2022;37(8):1534-1543. 등
4	젊은 유방암 환자에서 항암 치료 이후 난소억제주사제 추가사용은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HC19C0147) 호르몬 치료 반응성 유방암을 진단받은 폐경 이전의 젊은 유방암 환자에서 항암치료 이후 난소기능이 보존, 회복된 환자의 타목시펜에 난소 억제 주사제 추가 치료의 장기효과 비교 - <i>J Clin Oncol</i> . 2023;41(31):4864-4871. 등
5	폐암 환자가 양성자치료를 받은 후 폐합병증의 발생 및 삶의 질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HC19C0293) 폐암 환자에서 양성자치료의 임상적 유용성 - <i>Cancers</i> . 2021;13(14):3497., <i>Radiother Oncol</i> . 2021;156:166-173. 등
6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의 선별급여 도입 후 검사 및 치료법, 치료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무엇인가?	(HC19C0238)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 주요 암 진단과 치료에 미친 영향 분석
7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서 신경자극술은 약물 치료와 비교하여 효과적인가?	(HC19C0180) 난치성 뇌전증에서 신경자극술의 성과분석 연구
8	투석을 받는 말기 신부전 환자가 혈압 및 혈당을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하는가?	(HC19C0041) 투석환자의 사망을 및 삶의 질 개선과 비용 최적화를 위한 혈압, 혈당 치료지침 개발 - <i>Diabetes Res Clin Pract</i> . 2022;190:110016. 등
9	중증 천식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생물학적 제제(biologics) 간 효과의 차이가 있는가?	(HC19C0318) 중증 천식에서 생물학적 제제간 비교평가 후향연구
10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협착 병변의 치료에서 약물방출풍선카테터, 금속스텐트, 약물방출 금속스텐트 중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 대비 가장 효과적인 증재는 무엇인가?	(HC20C0081) 다기관코호트 데이터를 이용한 대퇴슬와동맥 협착병변의 치료에 사용되는 중재시술 의료기기 치료 효과 및 비용효과성 비교평가 - <i>Korean Circ J</i> . 2022;52(7):529-540. 등
11	수술 후 유착방지제를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임상적 효과성 및 비용효과는 어떠한가?	(HC20C0096) 수술 후 유착방지제 사용에 대한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 평가

* 2019년도, 2020년도 신규과제 공모계획안(RFP) 내 연구주제 및 연구질문에 대한 상세내용 확인 가능

** 종료과제의 최종보고서는 보건의료 R&D 포털 HTDream에서 확인 가능(<https://www.htdream.kr/>)

*** 연구질문 및 선정 과제의 대표 논문 성과를 제시함. 해당 서지정보를 참고하여 상세내용 확인 가능

체크리스트 항목 및 설명	보고기준	#페이지
영역(Domain) 1. 범위와 목적		
1. 목적 진료지침의 전반적인 목적을 구체적으로 보고한다. 예상되는 건강상 이득과 위해들이 임상적인 문제나 건강주제들에 맞게 구체적이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도하는 보건의료 범위 (예방, 선별, 진단, 치료 등) ▪ 기대이득 또는 건강결과 ▪ 목표 대상(환자집단, 사회) 	
2. 질문 진료지침에 포함된 건강질문, 특히 주요 권고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보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인구집단 ▪ 중재 또는 노출 ▪ 비교군 (적절한 경우) ▪ 건강결과 ▪ 적용할 세팅 또는 맥락 	
3. 인구집단 진료지침을 적용할 인구집단(환자, 일반인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인구집단, 성별, 연령 ▪ 임상적 상태(필요시) ▪ 중증도/질병 진행단계(관련있는 경우) ▪ 동반질환(관련있는 경우) ▪ 제외된 인구집단(관련있는 경우) 	
영역(Domain) 2. 이해당사자의 참여		
4. 개발그룹 진료지침 개발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을 보고한다. 지침개발의 운영위원회 구성원, 근거의 선정과 검토, 최종 권고 도출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의 이름 ▪ 분야/전문 영역(예: 신경외과의사, 방법론 전문가 등) ▪ 소속 기관(예: 000병원) ▪ 지역 (예: 경기도 수원시) ▪ 진료지침개발그룹에서 해당 위원의 역할 	
5. 적용할 인구집단의 관점과 선호도 진료지침을 적용할 인구집단(환자, 일반인 등)의 관점과 선호도를 어떻게 고려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보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공공(일반인)의 관점과 선호를 포착하는데 사용하는 전략 유형의 설명(예: 개발그룹에 참여, 문헌조사 등) ▪ 환자, 일반인의 관점과 선호도를 조사한 방법(예: 문헌근거,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 환자/일반인에 대해 수집된 건강결과/정보 ▪ 수집된 정보가 진료지침개발과정/권고도출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6. 목표사용자 진료지침을 주로 활용할 사용자 집단을 보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사용자 집단(예: 전문의, 가정의, 환자, 임상 또는 기관장/행정가) ▪ 진료지침이 목표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사용될지 (예, 임상적 의사결정에 정보제공, 정책결정에 정보제공, 표준치료에 정보제공) 	
영역(Domain) 3. 개발의 엄격성		
7. 근거 검색방법 근거의 검색에 사용된 전략을 구체적으로 보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를 검색한 전자데이터베이스 또는 검색원 (예: MEDLINE, EMBASE, PsychINFO, CINAHL) ▪ 검색기간(예,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 검색어(예, 자연어, 색인어, 부제어) ▪ 전체 검색전략의 포함(예,보통 부록에 포함) 	
8. 근거 선택기준 근거 선택(포함과 배제)의 기준을 분명하게 보고한다. 필요시 해당 사유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인구집단(환자, 일반인 등) 특성 ▪ 연구설계 ▪ 비교군 (관련있는 경우) ▪ 건강결과 ▪ 언어(관련있는 경우) ▪ 맥락(관련있는 경우) 	
9. 근거 자료의 강도와 한계 근거 자료의 강도와 한계가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 개별연구의 관점에서부터 모든 연구들을 합성한 전체근거의 수준을 고려한다. 이러한 개념의 보고를 촉진할수 있는 도구들이 존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설계 ▪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표본, 눈가림, 배정은폐, 분석방법) ▪ 고려된 일차 및 이차 건강결과들의 적절성/관련성 ▪ 연구 전반에 걸친 결과의 일관성 	

체크리스트 항목 및 설명	보고기준	#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전반에 걸친 결과의 방향성 ■ 이득의 크기 대 위해의 크기 ■ 실무적인 맥락에서의 적용성 	
<p>10. 권고안 도출 권고안 도출 방법과 어떻게 최종 의사결정에 이르렀는지 과정이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 불일치가 있었던 부분과 이의 해결방법도 구체적으로 보고한다.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보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 도출 과정(예, 수정델파이기법 사용, 투표 과정) ■ 권고 도출과정의 결과(예: 수정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합의에 도달한 정도, 투표 절차의 결과) ■ 절차가 권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델파이기법의 결과가 최종 권고에 미친 영향, 최종 투표와 권고의 일치성(alignment)) 	
<p>11. 이득과 위해의 고려 건강상의 이득, 부작용, 위험 요인이 권고안 도출 시 고려되었다는 것을 보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득을 지지하는 자료와 보고 ■ 위해/부작용/위험요인을 지지하는 자료와 보고 ■ 이득과 위해/부작용/위험요인 간의 균형/저울질 의 보고 ■ 권고는 이득과 위해/부작용/위험요인 모두를 고려하고 있음 	
<p>12. 권고안과 근거의 연결 권고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연결지을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개발그룹이 권고안과 근거를 어떻게 연결했고 사용했는지에 대한 방법 ■ 각 권고안과 근거의 연결(문장기술 또는 참고문헌 목록) ■ 권고안과 근거요약 그리고/또는 근거표의 연결 	
<p>13. 외부검토 외부검토 수행에 사용된 방법을 보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검토의 목적과 의도(예, 질적 향상, 권고안 초안에 대한 피드백 수렴, 적용성과 실행가능성 평가, 근거의 확산) ■ 외부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예, 평가 척도, 개방형 질문) ■ 외부검토자 관련 서술(예, 외부검토자 수, 유형, 소속기관) ■ 외부검토를 통해 수집된 결과/정보(예, 주요 결과의 요약) ■ 해당 정보가 진료지침 개발과정 및 권고안 도출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예, 진료지침개발그룹은 해당 정보를 최종 권고도출에 사용하였음) 	
<p>14. 갱신과정 진료지침의 갱신 절차를 보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지침이 갱신될 것이라는 문장이 있음 ■ 언제 갱신될 것이라는 명확한 시간 간격 또는 명확한 기준이 명시됨 ■ 갱신과정에 대한 방법론 	
영역(Domain) 4. 표현의 명확성		
<p>15. 구체적이며 모호하지 않은 권고문 어떤 중재가 어떤 상황, 어떤 인구집단에서 적절한지 근거에 기반하여 기술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하는 조치(행동)의 서술 ■ 권고하는 조치(행동)의 목적 또는 의도(예, 삶의 질 향상, 부작용 감소) ■ 관련 인구집단(환자, 일반인) ■ 관련있는 경우 조건문 또는 한정문(예, 적용하지 말아야 할 환자군 또는 조건) ■ 최선의 치료방침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지침에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함 	
<p>16. 관리 대안 임상 상태나 건강 이슈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대안에 대한 기술 ■ 각 대안별 가장 적절한 대상집단이나 임상적 상황 	
<p>17. 주요 권고안 확인 주요 권고안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약박스, 굵은 글씨체, 밑줄, 흐름도나 알고리즘 등으로 권고 표현 ■ 특정 권고들을 한 섹션에 묶어서 표현 	
영역(Domain) 5. 적용성		
<p>18. 실행 장애요인 및 촉진요인 진료지침은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장애요인과 촉진요인을 서술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한 장애요인과 촉진요인의 유형 ■ 권고실행을 위해 고려한 장애요인과 촉진요인 탐색 방법(예: 주요 이해관계자의 피드백, 지침의 본격 확산 전 시범 실행) 	

체크리스트 항목 및 설명	보고기준	#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요인과 촉진요인 유형에 대한 정보/설명(예: 실무자들이 권고실행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유방조영술대상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비가 확보되지 않았는지) ■ 해당 정보가 지침개발과정과 권고안 도출에 미친 영향의 서술 	
<p>19. 실행 조언/도구 진료지침은 권고안이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언과 도구를 제시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지침의 실행을 도와줄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 진료지침 요약 문서 • 체크리스트, 알고리즘 접근 링크 • 실행매뉴얼과 접근링크 • 장애요인 분석과 해결방안 • 촉진요소로 활용할 도구들 • 예비조사 결과와 교훈들 	
<p>20. 자원의 영향 권고안 적용 시 필요로 하는 잠재적인 자원의 영향과 의미를 모두 고려하여 기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한 비용 정보의 유형(예: 경제성 평가, 의약품 구입 비용) ■ 비용정보 탐색을 위해 사용한 방법(적합한 전문가가 지침개발그룹에 참여, 특정 약품 등에 대한 의료기술평가 정보 사용, 등) ■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비용정보의 기술(예: 치료과정당 특정 의약품 구입비용) ■ 조사된 비용정보가 진료지침 개발과정 및 권고안 도출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p>21. 감독/평가 기준 지침 권고안의 적용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감사기준을 제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의 실행 또는 권고안 준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 측정빈도 또는 간격에 대한 조언 ■ 기준을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조작적 정의 	
영역(Domain) 6. 편집의 독립성		
<p>22. 재정후원단체 진료지침의 내용에 대한 재정후원단체의 영향을 보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기관 또는 자금원의 이름(또는 재정 후원이 없었다는 명확한 서술) ■ 재정후원단체의 의견이 진료지침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서술 	
<p>23. 이해상충 개발 참여 구성원들이 이해상충 존재 여부를 선언하고 분명한 서술로 제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된 이해관계의 유형 ■ 잠재적 이해관계 상충 확인 방법 ■ 이해관계 상충 기술 ■ 이해관계 상충이 진료지침 개발과정 및 권고안 도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 2차 공모안내

IV. 신청요건 및 방법

1.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주관/공동 연구책임자 자격

- 해당사업 공모계획(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함
- ※ 연구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과제신청 전 반드시 사전문의 바람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 요망

2. 신청 제한

□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3책 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연구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과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과제(기관)	참여연구자	

- 다음의 경우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함
 - ① 제안요청서(RFP)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
 - ②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인 경우
 - ③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 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3. 과제구성 요건

□ 연구과제 구성요건

- 각 연구지원 공모계획(RFP)을 참고하여 연구과제를 구성
- 주관연구개발과제 내에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하여 공동·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②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③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4. 기타 유의사항

□ 차별성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 차별성 여부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확인하며,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차별성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1차적으로 차별성이 의심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차별성 여부를 과제평가단에서 심의·판단함

※ 연구자는 NTIS(www.ntis.go.kr)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차별성 검색방법: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차별성 검토)

□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관리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함
 -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에서 심의,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 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붙임 5. 참조)

□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 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붙임 6. 참조)

□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보고·공개

-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 연구 성과물 전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붙임 7. 참조)

□ 임상연구자료 공유

- 관련법령과 향후 사업단이 관계 부처와 협의 후 마련하게 될 임상연구 자료 공유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예상 연구성과에 대한 계량적 명시

- 성과목표 작성 관련
 - 과제 신청 시 성과목표(논문, 임상연구자료 확보, 고유성과)는 최소 요구 성과 이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과제 선정 이후 연구내용 및 성과목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공고단위와 관련하여 선행연구 및 기존 근거에 대한 현황(체계적 문헌고찰, 임상진료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총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점까지 예상되는 구체적인 연구성과(논문게재, 특허 출원 및 등록, 사업화 등)를 양식에 따라 계량적으로 명시하여야함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제시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이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주관·공동 연구책임자 평가위원 등록

- 신규과제로 선정될 경우, 주관·공동연구책임자는 추후 다른 과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풀에 등록될 예정임

□ 박사후연구원 고용증빙 서류 제출

- 신규과제로 선정될 경우, 참여연구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용 계획서 제출시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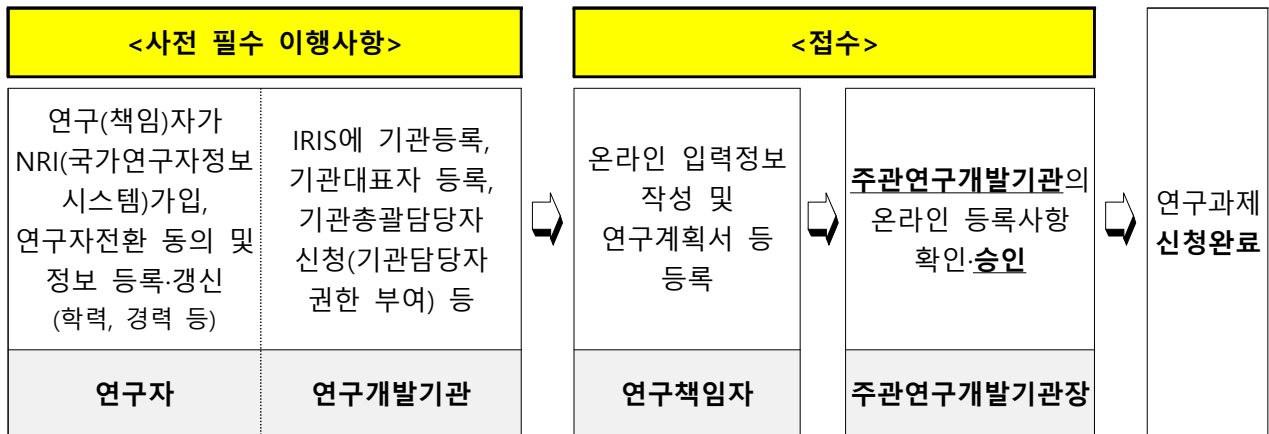
1. 신청방법 및 절차

- ▶ 2024년도부터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을 대신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 예정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전산입력 화면 접속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정보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탑재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자세한 접수 방법은 IRIS 사용 매뉴얼(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참고
(접수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IRIS 접수매뉴얼 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 알림/고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접수매뉴얼'다운로드

① 연구자 사전 필수 이행사항

- ① IRIS 회원가입, ②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자전환 동의 후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 ③ NRI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등록 필수

* 경력정보의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을 완료한 과제, 현재 수행신청 중인 과제 목록

- ①,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②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전 필수 이행사항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또한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

◆ 관련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2. 연구개발비 산정

□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2.1.1. 개정)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

※ RFP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연구개발비 결정 시 조정하여 지원될 수 있음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2.1.1. 개정)에 따라 계상하며, 총 연구개발비 내에 포함됨

- **간접비 비율 고시된 비영리기관(대학 등):**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

※ 연구기관이 대학일 경우 산학협력단에 간접비 확인 후 작성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병원 등):**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연구개발비 변경: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공동·위탁 포함)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

- 위탁연구개발비 신설은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후에 신설 가능함

- 연구수당·간접비 예산이 당초 연구계획에 누락된 경우 신설 및 증액 불가

3.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사업공고문 게시물 [붙임]서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 별도의 인쇄본 제출은 없음

- 서면 및 발표평가 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첨부서류 모두 활용하여 평가함

공고단위 (RFP명)	연구계획서 본문 양식	연구계획서 본문 (분량제한)	첨부서류
의료기술 비교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RFP별 서식 참조	50페이지 이내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중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RFP별 내용 확인 후 공지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4. 제출기한

<p>※ 공고단위(RFP)별 신청마감 시간(17:00: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p> <p>※ 신청 절차: [연구자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p> <p>※ 제출기한 내에 신청 완료 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 추가 접수 불가, 마감일 당일 신청이 몰려 접속 및 연구계획서 업로드 오류 발생이 우려 되므로 최소 2일 전에 신청 권장</p> <p>※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p>

공고단위 (RFP명)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전산입력) 마감일	주관연구개발기관 전자인증 (또는 공문제출) 마감일
의료기술 비교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2024. 6. 7. (금) 17:00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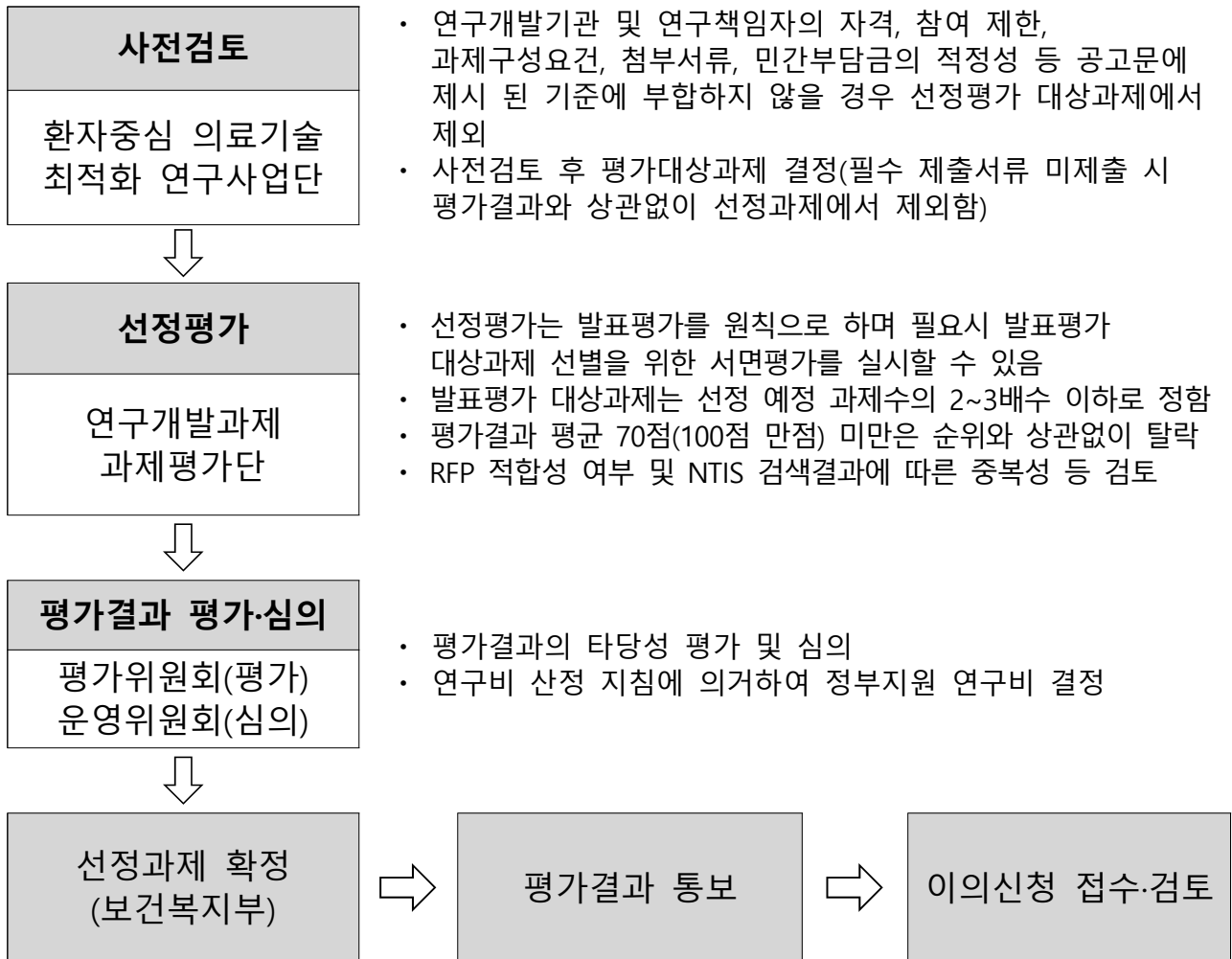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 2차 공모안내

V.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1

선정평가 절차

1. 선정평가 절차



1. 평가 방법

- 연구개발과제가 선정예정 과제수의 3배수 이상으로 접수되거나 발표 평가에 앞서 선별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서면평가 점수는 최종 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공고단위(RFP)	평가방법	평가점수 산출 방식		
		서면평가 (필요시)	발표평가	최종점수
의료기술 비교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발표 서면(필요시)	A	B	B

- 서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 후 발표평가 대상과제 수는 선정예정 과제 수가 1개일 경우 3배수로, 2개 이상일 경우 2배수 이하로 정함. 지원 과제가 선정예정 과제 수의 3배 이하일 때에는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과제 평가결과는 정량적 평가결과로 종합평가점수(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을 구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사) 및 정성적 평가 결과, 연구비 조정 등에 관한 종합평가의견을 제시함. 다만,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이 5명 이하일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음
- 지원과제 수가 많아 2개 이상의 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표준화 점수*를 이용하여 순위를 도출함

※ 과제평가단별 원점수를 평균을 90점으로, 편차를 5점으로 하는 표준화 분포로 변환한 점수
 [표준화 점수] = ((원점수-평균)/표준편차)×표준화편차 + 표준화평균

2. 평가 기준

- 주요 평가항목
 - “III.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참고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 2차 공모안내

VI. 향후 연구사업 관리

1. 협약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

- 주관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만, 주관연구책임자의 건강문제(사망, 장기입원 등), 퇴직, 부서이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요청이 가능함.
이때, 반드시 사업단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공동연구책임자 변경은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단에 승인 요청할 수 있음(다만, 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연구책임자 변경은 불허함)

□ 연구개발기관 변경

- 주관연구기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이 소형 개별연구인 경우에만 사업단에 승인 요청 가능함. 이 경우 다른 연구책임자로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2. 연차보고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2개년도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해야 함.
 - 연차평가는 연차보고서 제출로 같음하되, 현황파악을 위해 과제에 따라 연구책임자 구두발표, 전문가 검토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현장방문
 - 사업단은 필요 시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최종평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대하여 「최종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후 60일까지에 사업단장에게 제출함.

사업단은 이를 제출 받은 후 「최종보고서」 평가를 시행함

※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 대비 미흡한 경우, 행정제재(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

- 게재 논문 및 특허는 지원과제와 연관된 것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제임을 명기한 경우만 인정

4. 연구성과의 관리 및 평가

□ 예상 연구성과에 대한 계량적 명시

- 과제신청 시 제시한 성과지표에 의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연구계획서의 제출 시 총 연구기간 종료시점(성과유예 기간)까지 예상되는 구체적인 연구성과, 즉 논문, 특허 출원 및 등록, 산업화, 전시회참가, 학술 발표, 인력배출현황, 기타 성과물 등을 양식에 따라 계량적으로 명시함

□ 연구성과 활용현황의 보고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과제) 종료 후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 실적이 포함된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성과의 홍보

- 사업단이 연구성과의 홍보를 위하여 연구발표회 참가 등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성과의 홍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홍보 시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사실임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사업단과 반드시 사전협의하여야 함
 - ※ 대중매체를 통한 발표내용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가점 불인정 등 연구비 지원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성과를 발표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임을 표시하여 발표하여야 함

- 대중매체를 통하여 발표할 경우, 발표내용을 사업단과 반드시 사전협의
-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특허 출원(등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사표기

<논문>

- 국문 표기: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Patient-Centered Clinical Research Coordinating Center, PACEN)」 지원을 받았음(과제고유번호: HC24C0000)."
- 영문 표기: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Patient-Centered Clinical Research Coordinating Center (PACEN)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 : HC24C0000)."

* HC23C0000의 경우 각 과제별 고유번호 기재

- 연구종료 전·후, 연구성과 발생(논문게재, 특허 출원·등록 등)일로부터 1개월 이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수시 입력함

※ 과제관리 등 공모안내서와 RFP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규정 참고
(참고 사이트: www.iris.go.kr → 자료실 → IRIS 사용메뉴얼)

2

기타 사항

- 발표평가는 대면 또는 비대면 평가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 공지 또는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 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적용

※ 관련 법 및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3

문의처

담당 내용	연락처
연구내용 (연구개발1팀)	손희정 02-2174-2853
연구비 및 평가 관련 (과제평가팀)	조은서 02-2174-2529 우예은 02-2174-2757

연구시설·장비 도입 및 관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지침 참조]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도입 심의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을 작성·첨부하여 「과제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할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실시(선정과제 별도 안내)
 - ※ 선정 이후 : 차기년도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예산을 심의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본심의를 받아야 함(매년 5월경 예정)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 도입과 관련하여 변경사항(금액 변경·구축포기 등) 발생 시 사업단을 통하여 전문기관에 보고·승인을 득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 시설·장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구축일로부터 30일 이내 'ZEUS 연구개발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http://www.zeu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의 발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시설장비 도입 완료 후 연구개발비 정산 및 최종 보고서 제출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심의 의무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참조]

-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전부 개정(2019. 3. 12. 시행)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교육기관,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연구 수행시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 받아야 함
 - ※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 ▶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 수행 시 연구 수행기관의 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법 주요내용

- (목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 (인간대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①물리적으로 개입, ②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 ③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생명윤리법 제2조제1호)
 -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동법 제2조제12호)
 - * 인체유래물: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 (동법 제2조제11호)
- (IRB 역할 강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전 IRB 심의를 의무화하고, 해당 기관에 IRB 설치·운영을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 (공용IRB) IRB 설치가 어려운 개인연구자, 소규모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IRB 근거 마련
- (IRB 심의대상 연구의 범위)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유래물(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배아줄기세포주 등 포함)을 사용하는 연구만 IRB의 심의대상

□ 준수 사항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 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 수행 시 연구계획서 제출단계에서 해당 연구기관의 IRB 심사결과(심의결과서 또는 심의면제확인서) 제출 필요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 수행기관의 IRB 설치 및 등록 의무화
 - IRB 설치가 어려운 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 IRB와 협약을 통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 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연락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의사항이나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http://irb.or.kr> (irbqna@nibp.kr)

□ 9대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

○ 국가 R&D사업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 관련법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고시 제2019-58호, 2019.7.12.)

○ 각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시, 아래의 해당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기탁하여야 함
- 다만,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의 경우 연구자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등록하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담기관으로 등록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현황>

구분	연구성과물		전담기관	관리대상(등록·기탁 기준)
등록	논문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https://paper.kisti.re.kr)	국내외 학술단체 및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논문 (전자원문 포함)
	특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http://www.ripis.or.kr)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https://nrms.kisti.re.kr)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장비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http://www.zeus.go.kr)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취득한 장비 중 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
	기술요약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s://www.ntb.kr)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 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 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생명 자원*	생명 정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http://www.biodata.kr)	유전체 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질 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 정보(유전자 칩, 단백질 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신물질**	국립농업과학원 (https://genebank.go.kr)	생명정보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물질에 관한 정보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ros.or.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s://www.swbank.kr)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기탁	생명 자원*	생물 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http://biorp.kribb.re.kr)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http://chembank.org)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 * 생명자원의 관리·유통 전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자원법)」 제11조에 따라 범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하되,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명자원법 제8조에 의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자원의 정보와 실물을 등록·기탁
-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6조(품종보호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만족하고, 국립종자원 및 외국의 종자등록기관에 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

□ 임상연구정보 CRIS(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등록

- 등록대상: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대상자를 직접 관찰하는 코호트 등의 관찰연구 및 중재연구(임상시험) 등 모든 종류의 임상연구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임상연구 성과정보의 내실화 및 국내 임상연구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 구축된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http://cris.nih.go.kr>)에 지원과제와 관련된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연구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CRIS) 등록문의: 043-249-3085 / criskorea@korea.kr
- 성과보고시 임상연구 성과는 CRIS 등록 승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연구에 대한 온라인 등록시스템으로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음
- 2010년 5월 WHO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Platform(ICTRP)에 국가대표등록시스템(Primary Registry)으로 가입함에 따라, CRIS등록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본인의 연구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국제학술지에서 요구하는 등록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

※ 정보등록 시 유의사항

- 등록시점 : 첫 피험자 모집 전에 사전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도 등록이 가능
- 등록권한 : 회원가입 후, 등록권한 신청 및 승인절차를 거쳐 등록 가능
- 임상연구정보 갱신 : 임상연구를 등록한 사용자는 등록된 연구의 종료 시점까지 매 6개월마다 연구정보를 갱신하여야 함

□ 논문성과의 등록 및 공개

- 정부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해야 함
 - ※ 관련법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2항제4호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성과 중 논문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을 논문의 공개 및 공유 전담기관으로 지정

※ 관련법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고시 제2019-58호, 2019.7.12.)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 성과물 중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공식 출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논문의 최종본 전자파일을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 제출해야 함

- 연구자는 논문의 최종본 원고 제출 시 논문의 저작권을 소유하여야 함. 다만, 논문의 저작권을 출판사 또는 학회 등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논문이 국립보건연구원에 제출되어야 함을 고지하여야 함

※ 학술지(출판사)의 저작권 정책은 국립의과학지식센터 홈페이지(library.nih.go.kr → 전자지원 Journal Information)에서 확인 가능

※ 출판계약서 또는 저작권 양도계약서 체결 시 예시 문구

(출판사명 또는 학회명)는 저자가 게재 확정된 최종 원고를 국립보건연구원에 제출함으로써, 논문의 공식 출판 12개월 이내에 국립보건연구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보존소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Journal) acknowledges that Author retains the right to provide a copy of the final manuscript to the Korea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KNIH) upon acceptance for Journal publication, for public archiving in KNIH-operating digital repository as soon as possible but no later than 12 months after publication by (Journal).

※ 문의: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 043-249-3000 / yhcho519@korea.kr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1.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4.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항목	사용용도
5.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6.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 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숙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자)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카)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7.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항목	사용용도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2.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 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3.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항목	사용용도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비 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 2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 2의3. "박사후연구자"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사람(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